

# 세 제 개 혁

김 학 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 제 개 혁

1관1쇄 인쇄/ 2007년 12월 18일

1관1쇄 발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값 3,000원 / ISBN 978-89-8031-471-3

# 목 차

## I. 현황 및 문제점 / 7

1. 조세정책 여건변화 / 7
2. 조세수입 구조 / 8
3.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 14
4. 부동산 관련 세제 / 17
5. 상속 증여세 / 19

## II. 세계개혁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21

1. 세계개혁의 필요성 / 21
2. 세계개혁의 기본방향 / 22

## III. 실천방안 / 24

1. 장기 근본적 세계개혁 방안 / 24
2. 중 단기 실천방안 / 25

## 참고문헌 / 37

## 표 목차

- 표 1. 경상GDP 대비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 비중 | 8
- 표 2. GDP 대비 세목별 세수 비중 국제 비교 | 10
- 표 3. 종합소득세 납세자 비율 | 11
- 표 4.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율 | 11
- 표 5.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율 비교 | 12
- 표 6. 조세지출 추이 | 13
- 표 7. 부담률 추이 | 14
- 표 8. 기업의 준조세 부담 추이 | 15
- 표 9. 최근 부담률의 실제치와 적정수준 | 16
- 표 10. 경상GDP 대비 재산세 부담 추이 국제 비교 | 18
- 표 11. 장기 세제개편 방향 | 25
- 표 12.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추이 | 25
- 표 13. 실질GDP 1% 증가에 의한 노동유발효과 | 26
- 표 14. 한국의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률 | 28
- 표 15. 미국의 배당수입금액의 공제율 | 28

# 세계개혁





# I. 현황 및 문제점

## 1. 조세정책 여건변화

-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globalization)에 따른 생산요소 유치경쟁 심화
  - 자본뿐만 아니라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국가 간 경제적 국경은 이미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
  
-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급변과 성장잠재력 하락에 기인하여 세입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전망
  - KERI 장기 전망결과에 따르면 2007~2030년 연평균 GDP 성장률은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4.2%, 기준안의 경우 3.1%,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1.9%로 전망
  
- 반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만성적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
  - 북한의 핵실험 이후 최근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자주국방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단독수행 등을 추진함에 따라 국방분야의 재정수요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 상존

## 2. 조세수입 구조

### 가.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 비중

- 2001년 이후 3.2% 안팎이던 소득세 부담은 2006년 현재 4%, 2001년 3%이던 법인세 부담은 2003년 3.9%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3% 중후반의 수준을 보이며 2006년 현재 3.8%로 나타났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큰 변화 없이 4.5% 수준을 유지
-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인 총조세가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주는 조세부담률도 2001년 19.7%에서 2006년 21.2%로 증가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여주는 국세비중은 77% 수준

| 표 1. 경상GDP 대비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 비중 |

(단위: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소 득 세	3.3	3.1	3.2	3.3	3.3	4.0
법 인 세	3.0	3.1	3.9	3.5	4.0	3.8
부 가 가 치 세	4.2	4.6	4.6	4.4	4.5	4.5
조 세 부 담 률	19.7	19.8	20.4	19.5	20.1	21.2
국 세 비 중	77.8	76.6	77.6	77.5	78.0	76.8

주: 1) 2006년 통계는 잠정치

2)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 세액의 10%가 부가되는 주민세 포함

3) 국세비중은 총조세(=국세+지방세)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호; 재정경제부, "2006년도 세입결산자료", 2007.

- 2004년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의 정도는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sup>1)</sup>이지만, 회원국들의 소득세 조세 부담 추이는 2000년과 비교하여 소폭 하락

1) 한 국가의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의 정도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처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3. 조세 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참조.



- 2004년 개인소득세 비중(2000년 비중): OECD 평균 9.1%(9.8%), 한국 3.4%(3.4%), 일본 4.7%(4.5%), 미국 8.9%(12.5%), 캐나다 11.7%(13.1%), 뉴질랜드 14.6%(14.5%), 핀란드 14.6%(13.5%)
  - 2004년 법인세 비중(2000년 비중): OECD 평균 3.4%(3.7%), 한국 3.5%(3.3%), 일본 3.8%(3.7%), 미국 2.2%(2.6%), 캐나다 3.4%(4.4%), 뉴질랜드 4.1%(5.5%), 핀란드 3.6%(6.0%)
  - 2004년 소비세 비중(2000년 비중): OECD 평균 10.8%(10.8%), 한국 8.7%(8.6%), 일본 4.7%(4.6%), 미국 4.0%(4.1%), 캐나다 8.2%(8.1%), 뉴질랜드 11.2%(10.9%), 핀란드 13.6%(13.5%)
- 최근 OECD 국가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인 반면,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
- 2000년 OECD 평균 개인소득세 비중은 9.8%이었으나 2004년 평균 9.1%로 낮아졌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12.5%이던 2000년 개인소득세 비중은 2004년 8.9%로 크게 축소
  - OECD 평균 법인세 비중은 2000년 3.7%에서 2004년 3.4%로 소폭 축소되었으나 대표적 강소국인 핀란드의 경우 6%에서 3.6%로 크게 축소
  - 그러나 한국의 경우 모두 확대되는 경향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의 경우 확대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법인세율 인하 이외에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적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 표 2. GDP 대비 세목별 세수 비중 국제 비교 |

(단위: %)

구 분	개인소득세 비중		법인세 비중		소비세 비중	
	2000년	2004년	2000년	2004년	2000년	2004년
미 국	12.5	8.9	2.6	2.2	4.1	4.0
캐 나 다	13.1	11.7	4.4	3.4	8.1	8.2
이탈리아	10.4	10.5	2.9	2.8	10.6	9.8
프 랑 스	8.0	7.4	3.1	2.8	11.1	10.8
독 일	9.4	7.9	1.8	1.6	10.1	9.8
스 페 인	6.4	6.2	3.1	3.4	9.2	9.1
핀 란 드	14.6	13.5	6.0	3.6	13.5	13.6
스 웨 덴	17.5	15.8	4.0	3.2	12.6	12.6
네덜란드	6.0	6.1	4.0	3.1	10.4	10.9
뉴질랜드	14.5	14.6	4.1	5.5	10.9	11.2
호 주	11.8	12.6	6.3	5.7	8.1	8.2
일 본	4.5	4.7	3.7	3.8	4.6	4.7
한 국	3.4	3.4	3.3	3.5	8.6	8.7
OECD 단순평균	9.8	9.1	3.7	3.4	10.8	10.8

주: 소비세는 OECD에서 분류체계상 5100에 해당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판매, 이전, 대여 및 운반 등에 부과되는 모든 유형의 조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 수입분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 등)를 포괄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 나. 개인소득세 납세자 비율

- 종합소득세 과세인원 비율은 2001년 47.4%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5년 54.3%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개선 정도는 미흡
-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바라볼 때, 46% 수준의 납세자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은 향후 소득과약을 제고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

| 표 3. 종합소득세 납세자 비율 |

(단위: 천 명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납세인원(A)	3,808	4,161	4,227	4,363	4,370
과세미달 추정인원(①)	2,002	2,115	2,059	2,071	1,955
확정신고 대상인원(②)	1,807	2,046	2,168	2,292	2,415
과세인원 비율(②/A)	47.4	49.2	51.3	52.5	54.3

주: 납세인원에는 분리과세소득자,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 근로소득세 과세인원 비율은 2001년 56.3%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05년 47.1% 수준
- 1995년 70% 수준이었던 납세자 비율이 2005년 47%로 축소된 것은 과거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혜택의 확대에 기인하여 면세점이 높아진 결과임.

| 표 4.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율 |

(단위: 천 명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근로자 수	11,441	11,748	12,273	12,706	12,973
과세인원	6,447	6,188	6,268	6,268	6,107
납세자 비율	56.3	52.7	51.1	49.3	47.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통계청 『매월노동통계』, 각호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현재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50% 내외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에는 1990년에 이미 납세자 비율이 80% 이상
- 이처럼 낮은 소득세의 납세자 비율은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주요 수혜대상이어야 할 저소득 계층이 소득세체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함을 시사

- 따라서 향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들의 소득과 악률이 제고됨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종 개인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표 5.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율 비교 |

(단위: %)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1995년	2003년	1990년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율	68.8 (39.6)	51.0 (51.3)	83.0	80.0	80.0	83.0

주: ( ) 안의 숫자는 종합소득세 납세자 비율

자료: 콕태원 외,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6.

#### 다. 조세지출 비중

- 2001년 이후 조세지출 비중은 12.5%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13% 이상을 유지
  - 조세지출은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줄여주지만,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수혜자는 제한적이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키므로 합리적 정비 방안이 필요
  - OECD는 조세감면제도에 의해 조세지원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였으나 다른 분야에는 가격 및 조세의 왜곡효과가 있었다고 평가
- ‘국가재정법’에 포함된 조세감면총량한도제, 조세감면 사전제한제 및 조세지출예산제의 도입은 조세지출의 증가를 통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조세감면총량한도제(제88조)는 비과세 감면 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 조세감면사전제한제(제87조)는 새로운 조세감면법률안을 제출할 때 최초 시행연도부터 5년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의 변동에 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 방법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제도
  - 조세지출예산제도(제27조 및 제34조 제10호)는 조세지출과 세입세출예산을 통합하여 분석하기 위한 제도로써 조세지출예산서의 제출은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부칙 제6조)
- 조세감면 총량한도를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41조는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0.5%를 더한 비율”로 제한
- 조세감면 총량은 국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세수입의 0.5%씩 더 증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조세지출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유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표 6. 조세지출 추이 |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조세지출	13,730	14,726	17,508	18,286	20,017	21,338
총 국 세	93,677	103,197	114,661	117,752	127,035	138,044
조세지출 비중(%)	12.8	12.5	13.2	13.4	13.6	13.4

주: 조세지출 비중은 조세지출이 (총국세+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호;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 3.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각각 21.2%와 26.8% 수준
  - 국민부담률의 경우 1990년대에 확대 시행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그리고 1990년대 말에 새로이 도입된 고용보험의 기여금 증가에 기인하여 빠른 증가세 시현
  - 조세부담률도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대 평균보다 3.3%포인트 상승

| 표 7. 부담률 추이 |

(단위: %)

구 분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2001년	24.1	19.7
2002년	24.4	19.8
2003년	25.3	20.4
2004년	24.6	19.5
2005년	25.5	20.1
2006년	26.8	21.2
70년대 평균	14.9	14.8
80년대 평균	16.8	16.5
90년대 평균	19.7	17.8
2001~2006년 평균	25.1	21.1

주 1) 조세부담률=100×총조세/GDP, 국민부담률=100×(총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

2) 2005년 통계는 잠정치임.

자료: 1)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연호

2) 재정경제부, 『2006년도 세입결산자료』, 2007.

- 2004년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6.5%와 35.9%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2006년 부담률보다 높은 수준

- 재정수입 측면의 우리 정부의 규모는 OECD 국가보다 작아 보이지만, 각 나라의 경제규모 및 인구구조와 같이 부담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교할 필요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군복무 의무와 상당한 수준의 준조세 규모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률 수준은 공식 발표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
  - 손원의 외(2004)는 조세 이외의 기업의 비자발적 부담을 총칭하여 ‘광의의 준조세’라 정의하고, 기업이 받게 될 이득에 대한 보상이나 기업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비자발적 부담을 ‘협의의 준조세’로 정의하고 각각의 규모를 추정
  - 이와 같이 정의된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경상GDP 대비 비중으로 계산한 준조세 부담률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은 경상GDP의 2% 안팎의 협의의 준조세를 법인세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음(<표 8> 참조).

표 8. 기업의 준조세 부담 추이

(단위: 십억 원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광의의 준조세(A)	11,738	10,964	11,972	13,635	17,663	19,888	23,102
협의의 준조세(B)	8,676	8,885	9,730	11,090	14,405	15,283	16,872
(A/경상GDP)*100	2.4	2.3	2.3	2.4	2.8	2.9	3.2
(B/경상GDP)*100	1.8	1.8	1.8	1.9	2.3	2.2	2.3

주: 손원의 외(2004)에서 준조세 금액을 인용하여 경상GDP 대비 준조세 부담률을 계산  
 자료: 손원의 외,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4.

- 국회예산정책처(2006)는 경제규모, 노년부양률, 인구규모 등의 경제사회적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29개 OECD 국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적정부담률 수준을 분석
  - 경제규모가 클수록, 노년부양률이 높을수록, 인구규모가 낮을수록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증가
  - 조세부담률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적정수준보다 평균 약 1.2%포인트 낮아졌다가 적정수준과의 갭을 점차 줄여가며 2000년 이후 실제 조세부담률은 적정수준보다 0.7%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
  - 국민부담률은 적정수준보다 낮은 실적을 보이다가 2000년 이후 미세하게나마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수준
-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여 예측한 적정수준의 부담률과 실제수준을 비교하면 재정수입 측면의 정부규모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표 9. 최근 부담률의 실제치와 적정수준 |

(단위: %)

구 분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실제치	적정수준	실제치	적정수준
2000년	23.6	23.6	19.6	20.8
2001년	24.1	23.7	19.7	20.4
2002년	24.4	23.9	19.8	20.3
2003년	25.3	24.3	20.4	20.4
2004년	24.6	25.1	19.5	20.7
2005년	25.6	25.7	20.2	21.1
70년대 평균	14.9	14.8	14.8	13.7
80년대 평균	16.8	18.1	16.5	16.3
90년대 평균	19.7	21.1	17.8	19.0
2000~2005년 평균	24.6	24.4	19.9	20.6
2003~2005년 평균	25.2	25.0	20.0	2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분석』, 2006.



- 향후 인구고령화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본격적 증가 등으로 국민부담률을 구성하는 사회보장부담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정수준의 국민부담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목 신설 또는 세율 인상 등의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도입은 신중히 할 필요

#### 4. 부동산 관련 세제

-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양극화 완화'라는 명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전인 2004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재산세 부담은 OECD 평균 수준인 경상GDP의 1.9%를 크게 넘어서는 3% 수준에 근접
  -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의미하고 향후 시정될 필요
-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 보유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저해
  - 첫째, 부동산 보유와 다른 유형의 자산의 보유를 차별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만 징벌적 과세
  - 둘째,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아닌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 셋째, 금융소득의 부부합산과세가 위헌으로 판결난 것처럼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

표 10. 경상GDP 대비 재산세<sup>1)</sup> 부담 추이 국제 비교 |

(단위: %)

구 분	2000년	2004년
미 국	3.0	3.1
캐 나 다	3.4	3.4
프 랑 스	3.1	3.3
독 일	0.8	0.9
스 페 인	2.2	2.8
핀 란 드	1.2	1.1
스 웨 덴	1.8	1.6
네덜란드	2.1	2.0
뉴질랜드	1.8	1.8
호 주	2.7	2.7
일 본	2.8	2.6
한 국	2.9	2.8
OECD 평균	1.9	1.9

주: 1) OECD 분류코드 4000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부동산 거래 및 보유에 관련된 세금과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세를 포괄하며 주식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 종합부동산세는 대도시와 수도권 중산층의 주택 보유세 부담을 인상시켜 주거비를 지나치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재산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실거래가 기준과세는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양도세의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실거래가 기준과세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

-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의 목적 중 하나가 양극화 완화였으나 오히려 과중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중산층 재산형성을 저해
  - 중산층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저해하지는 않는 방향의 정책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임을 고려할 필요
- 법인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2006년 1,295개 법인에 의해 9,508억 원 규모로 집계
  -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의 3.8%에 불과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55.3%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
    - 기업의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사업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토지 보유량이 크기 때문에 세부담이 큼.
    -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는 경우 1.0~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금액도 3억 원에 불과하여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건설업과 같은 업종의 경우 토지의 구입 이후 착공 전까지는 비업무용으로 분류되어 과중한 세부담을 저야 함.

## 5.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세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은 2% 내외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국제적 추세와 부합하지 않음.
  - 캐나다 1972년, 호주 1977년, 뉴질랜드 1992년, 이탈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 2004년, 스웨덴 2005년에 상속과세 폐지

- 미국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증여세는 존속하는 법안이 통과
- 독일의 경우처럼 중소기업이 상속 후 일정기간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면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과세권자에 제한 없는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세기관에 폭넓은 재량적 판단권을 부여하여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주식 평가는 10~30%의 할증이 적용되어 기업 상속이 더 어려워짐.
  - 가족에 대한 경영권 상속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선택을 왜곡하며 과도한 배당 등을 통해 사내 유보를 억제하고 인위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경영행태를 유발할 가능성
- 우리나라의 상속과세는 유산과세형으로 조세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의 분산효과도 미약하다는 문제점
  - 유산과세형은 상속자의 수와 상관없이 피상속자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 전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형평성에 벗어남.

## II. 세계개혁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1. 세계개혁의 필요성

-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성장잠재력의 유지 및 확충이 가능한 조세제도로 개선할 필요
  -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지출의 확대를 요구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관련 지출뿐만 아니라 국방개혁 및 북한 지원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 글로벌화 및 국가 간 조세경쟁을 통하여 생산성이 높은 주요 생산요소들의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개인 및 법인소득세 세율 인상에 의한 세입증대효과는 기대하기 곤란
  -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 및 세무행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여 조세의 비효율성 이외의 추가적인 납세자의 부담으로 작용
  
-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둔화는 원활한 세입증대를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성장둔화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세입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선할 필요

## 2. 세계개혁의 기본방향

- 앞에서 언급한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성장극대화'를 위해 '조세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 세계개혁을 제안
- 근본적 세계개혁은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철폐하고 창출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한 번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철학을 구현
  - 기본적 아이디어는 Hall and Rabushka(1995)의 평율세(flat tax)와 Bradford(2005)의 X-tax에 근거
  - 모든 부가가치를 가계단계에서 과세하는 노동에 의한 부가가치와 기업단계에서 과세하는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에 의한 부가가치로 양분
  - 기업단계의 과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조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자원배분 왜곡을 최소화
  - 가계단계의 과세는 조세의 누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평율세(flat tax)에서는 면세점을 설정하고 X-tax의 경우 몇 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
  - 자동차 연료세, 주세, 담배세, 레저세 등의 외부성을 교정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는 세목은 존치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으로는 재산세를 활용

- 근본적 세계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게 될 현실적 어려움들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본 방향하에서 점진적 개선을 중·단기 대안으로 제시
  - 첫째, 개인소득세 납세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향상할 수 있도록 소득과악률 제고 및 불합리한 조세감면·비과세제도의 전면적 정비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의 비효율성 축소
  - 둘째, 여타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세제를 갖추으로써 생산성과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들을 국내로 유인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제적인 조세경쟁에 대비
  - 셋째, 과도한 부담률의 인상은 자본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나 효율저하를 초래하므로 재정지출 팽창의 적극적 억제 를 통하여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을 적정수준에서 유지

### Ⅲ. 실천 방안

#### 1. 장기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 앞에서 언급한 세제개혁 기본방향에 충실한 장기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모든 유형의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세를 부과
-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은 가계단계에서 완만한 누진세율 체계로 노동소득세를 부과
- 외부성을 교정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는 개별소비세 형태의 세목은 존치
- 부가가치로 계정되지 않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개인의 비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으로 활용
- 지방세는 재산세를 기초로 하되 기업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하여 일정한 지역 간 배분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분배
- 지방세 세수와 지방재정 지출 규모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과 병행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



| 표 11. 장기 세제개편 방향 |

구 분	세 목	내 용
국 세	기업세 (국세분; 모든 형태의 기업)	[매출액·매입액(투자 포함)+수입액]에 단일세율 적용, 수출에는 0세율 적용; 지방세와 공동세로 운영
	노동소득세	인건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완만한 누진세율 적용
	개별소비세	술, 담배, 도박, 환경오염유발 물질(탄소연료 등)
지방세	기업세(지방세분)	공동세
	재산세	기업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개인소유의 비사업용 부동산

자료: 광태완 전영준(2006)

## 2. 중·단기 실천방안

### 가.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표 12.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추이 |

(단위: %)

구 분	1965년	1975년	1985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호 주	42.5	42.5	46	33	34	30	30
캐나다	47	47	46	38	38	38	38
핀란드	48	n.a.	43	25	29	29	29
독 일	51	51	56	45	45	25	25
일 본	37	40	43.3	37.5	30	30	30
한 국	n.a.	27	30	30	28	28	27
스웨 덴	40	n.a.	52	28	28	28	28
영 국	n.a.	n.a.	45	33	30	30	30
미 국	48	48	46	35	35	35	35
OECD 평균	36.3	39.1	42.3	33.4	32.6	30.3	29.3

자료: Office of Tax Policy Research, World Tax Database(www.bus.umich.edu/OTPR)

- 1985년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42.3%이었으나 2002년 평균은 29.3%로 인하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도 1985년 30%에서 2002년 27%로 낮아졌으며 2005년 25%로 추가 인하
- 70개 국가의 1970~1997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세율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Lee and Gordon(2005)에 따르면 명목세율 10%포인트 인하는 경제성장률을 1.1~1.8%포인트 높임.
- 경제개방에 따라 법인세 세율과 세수사이의 관계가 약화된다는 이영(2005)의 실증분석은 법인세 세율이 세율에 대해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세율 인상은 세수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세율이 낮은 외국으로 기업활동을 이전함을 시사
- 법인세율 10%포인트 인하여 따른 실질 GDP 1.1~1.8%의 증가는 취업자(피용자)수를 9만6천~15만7천 명(5만6천~9만2천 명) 증가하게 할 것으로 기대

표 13. 실질GDP 1% 증가에 의한 노동유발효과

(단위: 천 명)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추정
취업자 증가	112	105	96	88
피용자 증가	71	68	59	51

주: 2005년 추정치는 과거의 노동유발효과 감소율을 이용하여 단순계산한 결과  
 자료: 이보선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4.

- 명목 법인세율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여 반대하는 주장도 다수이나, 홍콩의 현행 법인세율 17.5%는 2008년 16.5%로 인하할 예정이며, 싱가포르는 2007년부터 18%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등도 현행 법인세율 이  
하로 낮출 계획
  - 특히, 독일은 38.9%에서 2008년 29.8%로 9.1%포인트 낮출  
계획이며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34.43%  
의 세율을 25% 이하로 인하하는 것
  - 따라서 지속적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필요
-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을 어떻게 결정  
하는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므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
- 배당수입금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출자비율과  
법인유형에 따라 배당수입금 익금불산입률을 30~100%까  
지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영국 및 독일은 100%의 익금불  
산입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최소 70%의 익금불산입  
률을 적용(<표 14>, <표 15> 참조)
  - 2006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는 외국계기업의 한국 투  
자 저해요인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미도입을 지적한바, OECD  
회원국 중 21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외국자본 유치
  -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이윤극대화임에는 틀림없으나 기업  
의 지속가능성 또한 중요한 목표이므로 특정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제도 또는 소급공제제도를 확대할  
필요
    - 결손금이월공제는 현행 5년간 허용되고 있으나, 미국은  
20년간 허용

- 결손금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1년간 허용되고 있으나, 미국은 2년, 영국과 프랑스는 3년간 허용

표 14. 한국의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률

구분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 불산입률	지분율	익금 불산입률
지주회사	30 ~ 40 %	70 %	50% (벤처기업 20% ~ 80% 이하)	70 %
	40 ~ 100% 미만	90 %	80 ~ 100% 미만	90 %
	100%	100 %	100%	100 %
일반법인	30% 이하	30 %	50 % 이하	30 %
	30 ~ 100% 미만	50 %	50 ~ 100% 미만	50 %
	100%	100 %	100%	100 %

표 15. 미국의 배당수입금액의 공제율

지분율		공제율
타회사 지분	20% 이하	70%
	20 ~ 80%	80%
	80% 이상	100%
계열사		100%

- 김학수(2007)에 따르면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완화해 줌으로써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경상 GDP 대비 비중을 0.1%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투자는 1.13%, 노동은 0.15%, 실질 GDP는 0.17% 증가할 것으로 분석
- 같은 규모의 재정지출 비중을 확대하는 경우 투자는 감소하고 노동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실질GDP는 0.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

## 나. 개인소득세 납세자 비율 개선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과약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복식부기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7,500만 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에게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처벌 강화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과 고객 요구 시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액수에 상관없이 의무화함으로써 현금거래의 투명성 및 소득과약을 제고
- 추계과세 사업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현실화를 통해 기장사업자로 유도하는 한편,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확대<sup>2)</sup>
  -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5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추계과세
  - 추계과세 시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추계사업자의 84% 수준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 기준경비율이 실제경비율보다 높아 기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을 현실화할 필요
    -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 경비(인건비, 매입비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모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근거과세 원칙과 배치
-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운영기관 사이에 소득과약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원관리 및 세정의 효율성을 제고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

---

2) 전병목(2006) 참조.

세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보험료를 부과

-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의 성과로써 종합소득세 납세자 비율이 개선되는 수준에 맞추어 근로소득자들의 면세점을 낮추고 근로소득자의 납세자 비율을 함께 제고
  - 과거 확대하였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축소 및 폐지하여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

#### 다. 비과세·감면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조세지출 합리화

- 현재 거의 모든 세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226개 비과세·감면제도를 '계속 지원제도', '폐지 또는 축소 필요 제도', '일몰 신설 필요 제도'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비할 필요)
  - 계속 지원제도는 R&D·설비투자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와 같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 있는 제도들과 근로자 농어민·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
  - 폐지 또는 축소 필요 제도는 감면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의해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와 이용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포함
  - 일몰 신설 필요 제도는 개별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일몰이 없는 제도 중에서 한시적 지원 혹은 경기 대응적 차원에서 지원이 타당한 제도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일몰이 없는 제도를 포함

---

3) 박기백(2006) 참조.

- 조세감면 총량한도를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41조를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0.5%를 더한 비율"에서 특정 수준의 국세감면율로 제한할 필요
  - 조세감면 총량한도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감면율을 국세수입의 10% 수준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총량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과세 감면제도의 재정비가 시급

#### 라.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소득세율 인하

- 세수중립적인 견지에서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전체 세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경제 전반의 조세 비효율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조세에 의한 자원배분왜곡이 큰 세목들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자원배분왜곡이 작은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근본적 세계개혁과 현실의 타협
  - 중장기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및 국방 관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폭과 소득세율 인하폭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금융기관 등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어려운 면세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감산법 등을 적용하도록 허용하여 면세대상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필요

## 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방안

- 부동산 보유세 운용의 정상화를 위해 재산세 납부액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하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액으로부터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무력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인 재산세의 자율권을 제약
  - 현재보다 과세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모든 부담률도 부동산 평균 임대수익률의 35%를 넘지 않도록 제한<sup>4)</sup>
  -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대폭 완화
- 기업이 보유한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대책과 함께 과세특례대상 확대
  -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 인원 중 법인은 3.8%에 불과하지만 납부하는 세액의 비율은 55%를 상회
  - 이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이외의 새로운 세금 부담으로 기업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 기업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

---

4) 독일의 경우 이 비율이 50%를 넘으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다. 최명근 김상겸 (2004) 참조.



체 기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대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함.

- 업종의 특성상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백화점 등 유통서비스업은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비스업 발전을 저해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적용 대상 확대 필요
- 업무용 토지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대책이 요구됨.
  - 건설업과 같이 일정기간 토지를 나대지의 형태로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금액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높은 분양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 위헌 요소가 있는 세대별 합산과세제도 또한 폐지할 필요

-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현행 개인별 과세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에 대해 징벌적 조세를 부과하여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재산세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재조정 등 근본적 개혁을 토대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입기반의 차이를 교부세 및 교부세율 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높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확대
  - 최근 강화된 양도소득세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배제한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과세표준 현실화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의 인상과 함께 시행되어 부동산시장을 동결시키며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편할 필요
  - 기존 주택의 공급물량을 적절히 확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의 완화와 함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가 인하가 요구

#### 바.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

-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 상속인의 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 중심으로 상속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벗어나므로 증여세에서처럼 개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할 필요
- 완전포괄주의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로 환원
  - 최명근·조경엽(2006)은 완전포괄주의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의해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신축하는 것이 가능해져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결과적으로 완전포괄주의는 지나치게 과세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한 무리한 제도이므로 다시 종전의 유형별 포괄주의로 환원할 필요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법정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평가 할증제도 폐지

-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법인세율 수준으로 인하
- 기업을 상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효과가 더 크므로 대주주의 주식평가 할증제도는 폐지
  - 현행 할증제도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65%까지 높이는 경우를 초래하여 상속세 납부 후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확대 필요

- 독일처럼 중소기업 상속 후 일정기간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

- 금융실명제 등 경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조세인프라를 완비하여 조세 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과세장치 마련되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필요

사. 과세표준 구간 및 공제금액의 물가연동제 도입방안 고려

□ 물가인상에 의한 명목소득의 증가는 실질소득의 증가와 상관없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증대시켜 실질적 세부담을 인상

- 특히 누진적 세율구조의 과세체계에서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 속할 수 있어서 세부담이 가중

-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금액은 고정되어 있어서 물가인상에 따른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공제금액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
- 현행의 물가인상을 고려하지 않는 과세체계는 개편될 필요
  -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금액을 물가에 연동시킬 필요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6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의 기준금액도 주택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라 현실화할 필요

#### 아.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통한 조세효율성 제고

-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다중부과 방식의 세목 폐지
  - 높은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을 초래하는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부가세(surtax) 세목의 폐지
  -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를 일반세로 전환

## 「 참고문헌 」

- 곽태원·최명근·현진권·이영·전영준·조성진·김상겸, 『저성장시대의 조세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06.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호
- 국회예산정책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분석』, 2006.
- 김학수, 『KERI 2007 장기 거시경제모형과 전망결과』, 연구보고서 발간예정, 한국경제연구원.
- 박기백,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손원익·정재호·김형준·김상현,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이보선,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4.
- 전병목,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재정경제부, 『2006년도 세입결산자료』, 2007.
- \_\_\_\_\_,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연호
- \_\_\_\_\_,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호
- 최명근·김상겸,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정책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04.
- 최명근·조경엽,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06.
- 통계청, 『매월노동통계』, 각호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7.

- Bradford, David, "A tax System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 Auerbach, Alan J., and Kevin A. Hassett (eds.), *Toward Fundamental Tax Reform*, The AEI Press: Washington D.C., 2005.
- Hall, Robert E. and Alan Rabushka, *The Flat tax*, Stanford: Hoover Institute Press, 1995.
- Lee, Y and R. H. Gordon, "Tax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89, 2005, pp.1027-1043.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